

주취운전 단속에 관한 논의

A Study on the enforcement for Driving Under the Influence

강 맹 진

남부대학교

Kang maeng-jin

Nambu Univ.

요약

한국의 도로교통법에는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주취운전이라는 말보다 음주운전이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이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역시 말 그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하는 운전을 말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는 주취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단속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하는데, 0.05를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단속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 중이다.

I. 서론

주취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를 주취운전(酒臭運轉)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취운전이라는 말보다 음주운전이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이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역시 말 그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하는 운전을 말한다. 모든 국가에서는 주취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단속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하는데, 현재 단속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II. 변천과정

경찰청의 “도로교통 관련 법령 변천사” 등에 의하면, 주취운전 금지와 관련한 근대 우리의 규정으로는 1914년 「마차취체규칙」 제14조의 마부 등 준수사항, 1914년 「인력거취체규칙」 제10조의 인력거꾼 준수사항에서 술에 만취하여 영업하거나 승객 등에게 난폭한 언행금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915년 「자동차취체규칙」 제17조의 자동차운전종사자 준수사항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업하거나, 승객과 공중에 난폭한 언동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1934년 「자동차취체규칙」 제87조는 “운전자는 주기를 띤 채 운전하거나 운전 중 깃연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였다. 한편 주취기준은 1962년 「도로교통법시행령」 제정 당시, 혈액 1ml에 0.5mg, 호흡 1l에 0.25mg이었으며, 1989년 개정 시 혈중알콜농도 0.05%로 통일하였다.

III. 단속기준

우리나라에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781, 2015년 583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12.6%가 음주로 인한 사망자일 정도로 술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여전히 대표적인 사망사고의 원인이다.[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0.36% 이상이면 구속이 발생하는 사유가 된다. 혈중알콜농도가 0.1% 이하인 경우라면, 벌점 100점과 함께 100일 가량의 면허정지 처벌이 내려지며,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라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선고된다. 특히 「도로교통법」 44조 4항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사람이라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요인이 될 수 있다.[2] 혈중알콜농도 0.1%가 완전히 분해되기 위해서는 최소 5시간 내지 13시간 정도가 지나야 하고, 체중이 적게 나가거나 피로가 누적된 상태 또는 남성보다 여성인 경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3]

IV. 외국의 단속기준

1. 미국

방대한 영토와 주민자치, 다양성이 존재하는 국가여서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라고 지칭되는 주취운전에 대한 단속기준도 차이가 있다. 강화되는 추세이며 벌금액도 다양하다. 처음 적발된 경우 보통 6~12개월

면허 정지와 적게는 4500달러부터 1,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적발된 당일에는 구류처분을 하기도 한다. 또한 대폭 상승된 보험료를 일정 기간 부담한다. 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구금하는 경우도 있다. 단속된 경험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에 걸리면 1차보다 가혹할 정도의 벌칙이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시 경찰관이 혈중 알콜농도 측정 전에 한쪽 발을 들고 서 있게 하거나 숫자 등을 역순으로 카운터 하거나 선을 긋고 밟으며 걷는 것을 요구하는 등 방법도 다양하다.

2. 일본 등

일본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0.03% 이상의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분야의 중요한 세 가지 문제로 규정하였다. 음주운전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처벌한다. 단속 기준을 0.05%로 정한 뉴질랜드도 운전경력 2년 이하의 운전자에 한해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한 바 있다.

3.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등

터키에서는 처음 적발 시 6개월 면허정지와 벌금 349.90 터키 리라가 부과되며 2회 적발 시 2년 면허정지와 벌금 427.30 터키 리라가 부과된다. 3회 적발 시는 5년 면허정지와 벌금 684.3 터키 리라가 부과되며 정신과 치료가 병행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신문 등에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공고하기도 한다. 스웨덴은 혈중알콜농도 0.02%가 면허정지 기준이다. 운전 경력에 따라 단속 기준을 세분화한 국가들도 있다. 음주 단속기준이 0.08%인 캐나다는 운전 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20세 미만인 경우 한 잔만 마셔도 단속의 대상이다.

V. 논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취운전 단속 기준에 대하여 경찰은 설문 결과 이외에도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한 뒤 단속 기준 강화 찬성 여론이 높으면 이를 근거로 국민과 국회 등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단속기준 강화 움직임에 대하여 규제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단속기준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과연 음주운전이 줄어들겠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고 사망사고 비율이 증가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 [1] [헤럴드경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2016. 3. 22.
- [2]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
네이버 블로그, 법률도우미 법돌이, 변호사 박지훈 법률사무소, 음주운전, 생생지식,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kjun7474&logNo=220672166119>
- [3] 이석하, 「숙취와 음주운전」, 오피니언, 대구신문, 2016. 3. 26.